

제 57 차

정 기 이 사 회

◆ 일 시 : 2019년 3월 27일(수) 16:00

◆ 장 소 : DDP배움터 4층 아너스라운지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회 순

- 회의순서 안내 1

- I. 개회선언 3

- 전차 이사회 결과 보고 4

- II. 상정안건 심의·의결 토의 5
 - 1. 2018년 사업실적 결산 및 잉여금 처리 승인안 (의안번호 제174호) 6
 - 2. 2018년 재무회계 결산서 승인안 (의안번호 제175호) 7
 - 3. 2019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176호) 8
 - 4. 보수규정 개정안 (의안번호 제177호) 20
 - 5. DDP대관규정 개정안 (의안번호 제178호) 27

- III. 보고안건 보고 32
 - 1. 신입이사 임명 보고 및 노동이사 진행 보고
 - 2. 내규개정 보고(5건)
 - 3. 2018년 감사 종합보고

- IV. 폐회 36

(개회 : 16시 09분)

· 회의순서 안내

○ 간사 ○○○(지원본부장)

제57차 정기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차 정기이사회 간사를 맡은 지원본부 ○○○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 및 박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57차 정기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회는 임원 총 열네(14) 분 중 이사 열한(11) 분, 감사님 두(2)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입이사님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사장 ○○○

오늘이 2019년 첫 이사회입니다.

신임이사님 세 분 모시고 개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자로 임명되신 세 분 이사님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님은 현재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 이사님은 포스트비주얼 제작본부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 계신 ○○○ 이사님은 퍼셉션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 이사님부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수)

○ 이사 ○○○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의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많아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 이사 ○○○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트비주얼의 공동대표이자 인터랙티브 디렉터로 있는 ○○○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박수)

○ 이사 ○○○

안녕하세요. 저는 퍼셉션의 ○○○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저도 아무것도 몰라서 많이 가르쳐주시면 열심히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이사장 ○○○

세 분 다 아주 유능한 우리 디자인계의 귀한 보물 같은 분들입니다.

큰 기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 감사 ○○○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57차 정기이사회 상정안건은 총 5건으로 「2018년 사업실적 결산 및 잉여금 처리 승인안」, 두 번째 「2018년 재무회계 결산서 승인안」, 세 번째 「2019년 예산 및 사업 계획 변경안」, 네 번째 「보수규정 개정안」, 다섯 번째 「DDP 대관규정 개정안」 건입니다.

그리고 보고안건은 「신임이사 임명 및 노동이사 선거 진행 보고」, 「내규개정 보고」, 「2018년 감사보고」 세 건이 되겠습니다.

I . 개회선언

○ 간사 ○○○

그럼 지금부터 이사장님께서 개회선언 하신 후 이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차 서울디자인재단 정기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전차 이사회 결과 보고

○ 이사장 ○○○

시작 전에 지난 12월 21일 개최되었던 제56차 정기이사회 결과를 간단하게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6차 이사회 상정안건은 4건으로 「2019년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 「인사규정 개정안」,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노동이사 면직 처리 건」이었습니다.

먼저 2019년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은, 2019년 예산 세입 내역의 자체사업수익, 출연금 수익, 전기이월금 증액과 2019년 예산 세출 내역의 재단 운영사업, 패션봉제사업, DDP 운영,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 증액 및 감소 비용에 대하여 승인하셨습니다.

인사규정 개정안은,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의 인사운영 관련 규정정비 실태점검 통보에 따라 채용비리 직원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건과, 인사위원회 위원장 명칭 변경의 건,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직원 채용 자격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은 센터장과 감사실을 본부장급으로 명시하는 내용이었으나 명분이 명확하지 않아 부결되었으며, 노동이사 면직 처리 건은 부정선거 민원에 따른 서울시 조사과 행정요구 조치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 결과에 따라 면직 처리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사장 ○○○

고맙습니다.

혹시 전차 정기이사회 결과 보고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하는 이사 없음]

이사님들, 의견이 있으신지요?

○ 이사 ○○○

특별히 없습니다.

II. 상정안건 심의·의결 토의

○ 이사장 ○○○

그러면 다음은 제57차 이사회 상정안건 총 5건에 대해 간사는 각각 안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먼저 의안번호 제174호 「2018년 사업실적 결산 및 잉여금 처리 승인안」, 제175호 「2018년 재무회계 결산서 승인안」, 제176호 「2019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3개의 안건은 서로 같은 맥락상의 내용이고, 또한 분량이 작지 않아 이를 요약하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안건 자료와 함께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174호 : 2018년 사업실적 결산 및 잉여금 처리 승인안 】

○ 간사 ○○○

의안번호 제174호 내용입니다.

운영조례 제15조 및 정관 37조에 따라 2018년 사업 운영계획의 결산실적을 보고하며, 그 결산 결과에 따른 잉여금 처리를 승인하는 안건입니다.

예산결산은 회계감사 지정 회계법인의 검토를 3월 중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결산 결과로는, 세입은 546억, 세출은 439억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107억 가량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목표액 548억 대비 2억 부족한 546억을 달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목표인 548억 대비 증가하였는데 439억을 지출하여 약 109억원 가량 미달된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017년 대비 47억 가량 증가하였는데, 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주요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사용 예비비 22억, 신규인력 미채용에 의한 일반관리비 29억, 재단 내 패션사업비 불용액 29억, DDP 재정 축소 운영으로 절감한 금액이 17억,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업비 불용액 3억, 기타 7억 등이 있습니다.

2018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7억은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2019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게 됩니다.

2018년 12월 말 56차 이사회 시 2019년 사업예산을 의결하며 잉여금 63.4억을 세입예산으로 기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7억 중 나머지 44억에 대해 금번 이사회를 통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배정되는 순세계잉여금 44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DDP는 자체세입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설물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비 추가편성이 필요하여 9.3억을 DDP 시설 운영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단의 자체 노력에 의한 수익금 2.8억은 기본재산으로 편성되며, 이는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상에 의한 것으로 재단에서 운영하는 건물관리수입, 주차수입, 출판물수입, 상품판매수입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단과 패션본부의 세계잉여금 32억은 전부 예비비로 편성코자 합니다.

【 의안번호 제175호 : 2018년 재무회계 결산서 승인안 】

○ 간사 ○○○

다음 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2018년 재무회계 결산서 승인 내용입니다.

재무상태표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단의 재무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재무상태표상 재단의 자산은 235억, 부채 61억, 자본 174억입니다.

자본의 대부분은 금융상품자산과 유·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채는 대부분 서울시 수탁사업 미 종료에 따른 반납할 사업비 잔액과 직원 일시퇴직에 대비한 퇴직충당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은 차입금 관련 부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영성과표는 오른쪽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운영성과표는 2018년 1년과 수입과 비용 내용을 나타낸 것으로 예산제입결산서와는 다르게 전년도 잉여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수익은 524억으로 출연금 비중이 58%, DDP 수입이 24%, 기타 사업이 18%로 출연금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사업비용은 475억으로 디자인사업, 패션사업, DDP사업을 위한 사업수행비용이 전체 사업비용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단의 수익금 대부분이 재단의 고유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라 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53억으로 세계잉여금의 증가와 서울시 수탁사업수익 등에 의해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의 상세내용은 안전자료 <별지1>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대비 계정별 증감 현황 및 사유는 <별지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176호 : 2019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

○ 간사 ○○○

다음 PPT 의안번호 제176호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 건입니다.

앞의 의안번호 174호에서 보고된 '18년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44억의 '19년도 세입처리와 더불어 예산·사업계획상의 변동되는 안건에 대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체 세입·세출 예산 총액이 변동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606.7억에서 645.4억으로 38.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44억이 2019년도 이월금으로 전부 편입되었으며, 2019년 후반에 개최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자체 수입 운영수입 3억이 수익 세입 예산으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DDP 살림터의 임대수입 감소로 인한 자체수입이 8억 가량 감소되어 전체 세입 예산은 38.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변동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DDP 운영시설 위탁사업비용이 1억 증액되었습니다.

DDP 경우 세입으로 이월금 9억을 증액하였으나, DDP 자체세입 감소분 8억이 발생하여 차액인 1억만 시설위탁사업비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DDP 운영을 위한 시설인력을 증원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축비엔날레의 경우 자체수익으로 벌어들이는 3.2억을 그대로 사업비에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행사를 알리고 홍보하는 비용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비용은 재단의 예비비로 32억과 기본재산 편입으로 2.8억이 편입되게 됩니다.

전체 예산 세입·세출 내역 변동과는 별도로 인건비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9년 3월 중 재단에서 진행했던 계약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인건비의 내역 변동 건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계약직 정규직 전환 완료에 따라 사업비 내에 편성되어 있던 계약직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감액하여 정규직 인건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월 26일부로 전환작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기존 사업비에 편성된 6명의 인건비 6,800만

원을 재단 정규직 인건비로 전용코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배포해 드린 이사회 안건 내용과 붙임자료상에 모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상 2018년 재무회계의 결산과 예산·사업 변경 내역과 관련한 의안번호 제174호, 제175호 및 제176호에 대한 안건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 이사장 ○○○

설명 고맙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이사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

의견은 아니고, 잘 몰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료 15쪽~16쪽에 보시면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여기 회계 전공하신 분이 계시죠?

○ 대표이사 ○○○

있습니다.

○ 이사 ○○○

여기 기본적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17쪽 보면 I이 사업수익이고 II가 사업비용인데, 사업비용에 아라비아 숫자로 '1. 사업수행비용' 해서 거기에 보면 '(1) 디자인사업수행비용' 밑에 보면 기타비용이라고 그래서 64억5,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 패션사업수행비용'이 있는데 기타비용이 104억, 그다음에 '(3)'번에도 보면 기타비용이 95억, 주로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사업수행비용이 대부분은 기타비용이에요.

두 번째 일반관리비용에서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18쪽 '3'번에 기타사업비용이 있어서 거기도 역시 기타비용이 56억 해서, 핵심은 전반적인 사업수행비용이 기타비용으로 돼 있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기타비용'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타가 헤드보다 작아야지, 이것이 전체의 한 70%~80%가 기타비용으로 되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사실 현실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회계 쪽에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요.

감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 감사 ○○○

저도 동일하게 체크를 해 봤는데, 이 비용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 계약회계팀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출연기관들은 2017년까지는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했는데,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공익법인들이 만들어 내야 할 회계기준서를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디자인사업, 패션사업, DDP 사업, 재단이 목적사업을 보유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비용별로 따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그 사업비용을 다시 분배, 인력, 시설, 기타비용으로 분류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비용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수혜자들에게 주는 돈, 인력비용은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 시설은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 그 외에 모든 비용을 기타비용 안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운영성과표상에는 네 분류로만 해 놓고, 저희 감사보고서상의 주석 안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 이사 ○○○

기타비용이 실제 행사비용 기타비용에 들어가서 말씀이시거든요.

○ 계약회계팀 ○○○

예, 그렇습니다.

○ 감사 ○○○

세부사항으로 주석표에 나와 있던 감사보고서 할 때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 계약회계팀 ○○○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주석에는 다 상세히 실려져 있습니다.

○ 이사 ○○○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라면 따라야 되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건의는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예를 들면 밑에 ‘※’ 표시해서 기타비용에 대해서 ‘기타비용1, 기타비용2’ 해서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해서 주면, 결국 이것을 우리가 외부인한테 내용을 알려주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큰 틀의 통이라는 쪽에서 자기들은 통계학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실제 해당 기관별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 계약회계팀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첫해 시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있는데, 점점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사 ○○○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문화본부 산하 재단들 마찬가지로일 것 같은데요.

○ 이사 ○○○

기준이 바뀐 것 같아요.

(p)20 보니까 종전에는 기업회계기준 적용하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하면서, 아마 재단이나 이런 쪽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 이사 ○○○

한 가지 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세출조정 맨 밑에 기본재산 편입에 2억7,900만원이 있는데, 세출에서 기본재산 편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어떤 뜻인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책기획팀 ○○○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지침상에 기본재산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세출항목으로 편성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출항목상에 기본재산 편입이라는 항목을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 이사 ○○○

그러면 이것이 기본재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 정책기획팀 ○○○

예, 맞습니다.

○ 이사 ○○○

기본재산에 그러면 자본금으로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 정책기획팀 ○○○

예, 그렇습니다.

○ 이사 ○○○

그러면 이 부분을 다음에 우리가 기업회계기준으로 가면 자본금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 정책기획팀 ○○○

예, 그렇습니다.

○ 이사 ○○○

자본금 이전 경비네요. 그렇죠?

○ 정책기획팀 ○○○

예.

○ 이사 ○○○

알겠습니다.

○ 이사장 ○○○

그동안 서울디자인재단에는 이 기본재산이 있었습니까?

○ 정책기획팀 ○○○

100만원만 돼 있었습니다.

○ 이사장 ○○○

이제 기본재산을 확보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 정책기획팀 ○○○

예.

○ 이사 ○○○

그런데 제가 그것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본금을 처음에 100만원으로 시작했다는 게 약간 퀘스천이거든요.

○ 대표이사 ○○○

시에서 투자를 안 하신..

○ 이사 ○○○

일반적으로 할 때 기본적으로 보통 10억을 해 주지, 100만원 주지 않거든요.

아니면 이것이 자본 잠식상태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기본재산이 없어서 이것이 줄어서 100만원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제 상식으로 서울시에서 재단을 만들면서 기본재산으로 100만원을 준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이 혹시 앞으로 이 돈이 들어가면, 2억7,900이 들어가면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 계약회계팀 ○○○

자본금으로 들어갑니다.

○ 이사 ○○○

그러면 결국 이것이 엄밀히 보면 이익잉여금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돈 자체가 세입과 세출액 차액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잖아요. 수입과 지출의 차액에서.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 이익잉여금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떤 때는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어떤 때는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원칙이..

○ 정책기획팀 ○○○

저희가 재단에서 단순 집행잔액의 경우에는 잉여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이
고요.

○ 이사 ○○○

단순 집행잔액은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간다?

○ 정책기획팀 ○○○

예. 그리고 재단의 자체 수입노력에 의한 것, 저희가 벌어들이고 있는 상품판매수익이
라든가 주차장 관리 수입 이런 부분들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
습니다.

○ 이사 ○○○

그러니까 수입의 소스에 따라서 가는 경로가 다르다?

○ 정책기획팀 ○○○

예.

○ 이사 ○○○

그 규정이 정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정관에 보면 '잉여금 중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그것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 이사 ○○○

기본재산이 제일 많았을 때는 얼마정도 됐었어요?

○ 정책기획팀 ○○○

기본재산 변동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대표이사 ○○○

처음부터 100만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시작부터 100만원, 이번에 처음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후에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 굉장히 투자를 하면서 시작하셨고요. 그렇죠?

○ 이사 ○○○

문화재단은 스토리가 있고요.

○ 이사 ○○○

아무튼 우리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생각할 때 100만원으로 재단을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 대표이사 ○○○

산하기관 중에 최하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초기에 취임해서 궁금해서 열어봤거든요.

○ 이사장 ○○○

다른 산하기관들은 보통 지금 말씀하신 기본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정책기획팀 ○○○

세종문화회관도 100만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금 형태로 조성돼서 100억 단위로 시작했었습니다.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금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초기에는 100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 이사 ○○○

세종문화회관은 워낙 오래됐잖아요.

그 옛날에 100만원하고, 그러니까 이 디자인재단 만들 때하고 세종문화회관하고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관을 보지는 않았는데 정관상에 만약 우리 이사회가 의결해서 기본재산을 더 늘릴 수 있다면 우리 이사회 의결 가지고 기본재산 늘려나가죠.

그것이 좋지 않겠어요?

○ 대표이사 ○○○

감사합니다.

○ 이사 ○○○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말씀처럼 서울특별시 및 정부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단, 그렇다면 이 헤계모니를 사회에서 의결하면 된다는 정관이 돼 있는데, 정관과 달리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어떤 것은 기본재산, 어떤 것은 이익잉여금으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정관하고 상충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 정책기획팀 ○○○

예.

○ 이사 ○○○

그러니까 정관에서는 이사회 의결로 되는데, 위에 지침은 그렇지 않고 이사회 의결 말고 규정으로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이사회 의결이 우선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는 민간 재단이기 때문에 민간 재단은 이사회 의결이 우선이죠.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죠.

○ 정책기획팀 ○○○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사 ○○○

우리가 지금 기본재산의 용도가 뭐죠?

○ 정책기획팀 ○○○

원래는 준비금 형태이고요.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출연금 안에 추가금액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 이사 ○○○

출연금 안에 추가로 편성이 된다?

○ 정책기획팀 ○○○

예.

○ 이사 ○○○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 없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디자인재단이 '기본재산이 100만원이다.' 대외적으로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은행에 예금으로 남아있을 것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 이사장 ○○○

기본재산을 많이 편입할 수 있도록 이런 저런 연구를 하시고, 돈도 많이 벌여 오시고

○ 대표이사 ○○○

DDP에서 수익을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 ○○○

다른 이사님들 혹시 의견, 예, 말씀하시죠.

○ 이사 ○○○

(p)8 보시면 세입에 도시건축비엔날레 3억,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p)9 보면 세출로 3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p)22 가서 변경된 내용에 세입·세출이 3억으로 돼 있다가 갑자기 자체수입 증가로 2,300만원이 추가돼서 판매수입이, 그럼 세출 세입 될 때 뭐가 잘못 잡혔나요? 왜 이것이 3억2,300이죠?

○ 정책기획팀 ○○○

도시건축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이 3억은 작년도에 넘어온, 그러니까 2018년도 출연금이월입니다.

이월금 3억이고, 거기에 이번 년도 출연금 45억이 더해진 상태에서 현재 예산 48억입니다. 그 상태에서 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단이 꾸러지면서 거기서 티켓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금액이 생기다 보니 신규수입으로 3억이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8억 플러스 3억 해서 51억이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 이사 ○○○

그게 아니라 2,300만원이 왜..

지금 그 질문이 아닌데요.

(p)22 보면 비엔날레 자체수입 증가, 그러니까 3억이 아니라 3억2,300만원을 증가시켰다는 얘기잖아요.

○ 정책기획팀 ○○○

예.

○ 이사장 ○○○

3억2천을 입장료 수입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 이사 ○○○

그러니까 작년 것 이월된 것은 3억이고, 올해는 3억2,300만원을 증액했다는 것.

○ 정책기획팀 ○○○

더 벌겠다 라는.

○ 이사 ○○○

예.

○ 이사장 ○○○

1회 때 도시건축비엔날레의 총 예산이 얼마였나요?

○ 정책기획팀 ○○○

60억 가량 됐습니다.

○ 이사장 ○○○

2회 예산은 48억에 3억을 더해서 51억 정도인 것이죠?

올해 예산이 9억 정도 감소한.

○ 정책기획팀 ○○○

예, 맞습니다.

○ 이사 ○○○

예상을 하는데 3억2천도 아니고 3억2,300만원이라고.
이상하게 잡힌 것 같아서요.

○ 이사장 ○○○

글쎄요,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을 하셨나봐요. 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

○ 이사 ○○○

그러니까 작년 수입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겠죠.

○ 대표이사 ○○○

홍보를 더 한다든지 작년에 조금 늘었다..

○ 이사 ○○○

알겠습니다.

○ 이사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사들 있음]

예, 의견이 없으시면 「2018년 사업실적 결산 및 잉여금 처리 승인안」, 그리고 「2018년 재무회계 결산서 승인안」, 「2019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3건을 모두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안번호 제177호 : 보수규정 개정안 】

○ 이사장 ○○○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다음은 보수규정 개정안 의안번호 제177호 관련입니다.

자료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규정 개정 내용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서울디자인재단 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보수규정 내 기본연봉 한계액을 조정하는 건으로 2019년도 총 인건비 인상률 및 서울형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보수규정 <별표1>의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와 <별표6> 경력환산기준표를 개정하는 건입니다.

2019년도 총 인건비 인상률은 전 직급 1.8% 이내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임금에 해당되는 전문직 마급에 대한 연봉 하한액을 11.24%로 조정하고 그에 따라 전문직 다급과 라급, 일반직 5, 6급은 차하위 직급간 기존 연봉구간의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코자 합니다. 즉, 전문직 다급에서부터 마급까지 일반직 6급의 하한액은 11.24%를 인상하고, 5급은 기존 6급과의 구간 비율을 적용하여 7.4%로 인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 임용 시 연봉 결정 기준과 직급별 최대 경력 인정 범위 명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수규정 제11조 1호에 따라 신규 임용 시 연봉 결정은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라 대표이사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력환산기준표가 보수규정 <별표6>과 보수규정 시행내규 <별표5>가 동일 명칭으로 표기돼 있어서 보수규정 <별표6>을 '연봉 산정표'로 이름을 변경하고, 신규 임용 시 연봉 결정은 <별표6> 연봉산정표와 보수규정 시행내규 <별표5> 경력환산기준표로 변경하고, 현재는 대표이사 방침으로 운영되던 신규 임용 시 직급별 최대 경력 인정범위를 6급은 2년, 5급은 4년, 4급은 8년, 3급은 11년으로 보수규정 <별표6> 연봉 산정표에 명시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 내규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대상 일치를 위해 보수규정 <별표2> 부가급여 지급기준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13조 1항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된 법정 안전관

리자 내용을 보수규정에도 동일하게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사장 ○○○

설명 고맙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이사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

메일로 보내줄 때는 경력환산기준표라는 것이 있던데, 여기 띄울 수 있어요?

○ 간사 ○○○

그것은 지금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 이사 ○○○

오늘 자료에도 없고, 메일로 보내줄 때는 경력환산기준표라는 것을 보냈던데요.
거기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 대표이사 ○○○

(p)39 중간에 있습니다.

○ 이사 ○○○

이 내용이 아닌데요.

<별표5> 경력환산기준표, 거기 표 밑에 4번 '경력의 계산은 7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7개월 미만은 1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

○ 지원본부 ○○○

예, '중략'으로 되어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사 ○○○

이 내용으로 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데, 예를 들면 7개월 이상은 1년으로 환산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면 아예 1년도 안 되게 뺀다는 얘기죠?

○ 지원본부 ○○○

예, 그렇습니다.

○ 이사 ○○○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한 곳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 지원본부 ○○○

예.

○ 이사 ○○○

그러면 4개월, 5개월은 뭐예요?

○ 지원본부 ○○○

4개월, 5개월은 7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 이사 ○○○

그러면 1년도 인정 안 되잖아요.

그러면 3개월 미만은 인정 안 해 준다는 얘기는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규정이 이상해요.

○ 지원본부 ○○○

중복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사 ○○○

중복이 아니라, 위에는 7개월 이상만 인정해 준다 했어요.

그런데 밑에 ‘3개월 미만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안 맞잖아요.

○ 간사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6개월 미만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돼 있는 규정이 있고, 조금 전에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3개월 미만은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력 산정을 할 때 여러 개의 경력증명서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산하여 경력을 산정하는데,

○ 이사 ○○○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표현이 명확해야 돼요.

‘합산할 경우에’ 이렇게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깐 말이 서로 위에 말하고 아랫말이 안 맞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1년 7개월, 예를 들면 1년 7개월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 규정으로 보면 1년 7개월은 2년으로 인정해 줘요.

또 다른 데서 1년 7개월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2년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간사 ○○○

그렇게 산정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 이사 ○○○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합산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그냥..

○ 간사 ○○○

1년 7개월은 19개월로 산정이 되고요.

○ 이사 ○○○

경력이 여러 군데 근무했을 경우는 합산하여 개월수로 따져서 합산한다! 이렇게 가야지, 한 곳에 근무한 경력이 7개월 이상이면 1년으로 해 주고 이러면 두 곳 이상 근무했을 때는, 1년 7개월, 1년 7개월 근무하면 따로따로 했을 때는 4년이 되고, 합산하면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표현을, 합산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간사 ○○○

예, 합산 시에 대한 내용은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사 ○○○

그래서 밑에 '한 곳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기준도 분명히 해야 위에 말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 간사 ○○○

그것은 이사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후 보수규정 개정 시 반영하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사 ○○○

궁금한 게 있는데, 2019년 인건비와 연봉은 이미 조정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오늘 이후에 보수규정이 바뀌면 조정이 다시 되는 것인가요?
인상이 이미 된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서요.

○ 간사 ○○○

보수는 저희들이 임금협상을 노조와 12월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아직 임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사 ○○○

2019년 아직 안 된 거예요?

○ 간사 ○○○

그렇습니다.

○ 이사 ○○○

4월인데요?

○ 간사 ○○○

그렇습니다.

2019년도 연도 말에 인건비 총액과 기타비용을 다 합해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전부 다 합산해서 임단협을 통해서 임금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단협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2018년도 연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사 ○○○

그럼 그것이 한번 결정이 되면 소급된다든지..

○ 간사 ○○○

예, 소급됩니다.

○ 이사 ○○○

4월에 아직 안 정해지는 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 간사 ○○○

예, 그렇습니다.

○ 이사 ○○○

디자인재단은 통상 임단협이 언제쯤 되나요?

○ 간사 ○○○

협상은 11월부터 시작이 되고, 통상적으로 12월 내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 이사 ○○○

지금 말씀하실 때 ○○○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 이사님 말씀은 그 부분을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하면서 수정해서 의결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 본부장님 답변은 다음번 보수규정 검토할 때 수정..

○ 이사 ○○○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지원본부 ○○○

경력환산기준표는 보수규정 시행내규라서 이사회 의결사항은 아니고요.

○ 이사 ○○○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참고사항인가요?

○ 지원본부 ○○○

예.

○ 이사 ○○○

예,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이면 의결하면서 의견으로서 이사회에서 그것을 반영하라고 의결한 것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이사들 있음]

○ 이사장 ○○○

예. 지금 우리 한 이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재단의 경력환산기준표의 인정 범위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으로 ○○○ 이사님의 발의를 정리해 주셔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알겠습니다.

○ 이사장 ○○○

그 외에 이상이 없으면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들 “예.”]

【 의안번호 제178호 : DDP 대관규정 개정안 】

○ 이사장 ○○○

다음 설명해 주시죠.

○ 간사 ○○○

다음은 「DDP 대관규정 개정안」 의안번호 제178호 관련입니다.

자료 46쪽입니다.

현재 DDP 알림터 대관은 1일 기본 9시부터 21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시간 외에 철야 대관에 대해서는 책정 기준이 부재하여 철야 대관 시 1일 대관료를 징수함으로써 대관자의 부담 가중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민원이 제기되어 철야시간대 대관료 기준을 책정코자 합니다.

<별표1>의 DDP 대관료 1. 기본시설 대관료 2항의 알림터 철야시간대의 대관료를 시간당 단가에 150%를 할증하고, 이는 1일 대관 운영시간 사용 후에 부득이한 경우 연장만 가능토록 하고자 합니다.

실제 철야시간대에 대관을 운영하려면 DDP 시설 보안 및 안전사고 대비 직원 연장근로수당 등의 인건비와 기타 전기, 조명, 음향 등 공과관리 요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작업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유사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책정된 요금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사장 ○○○

이 철야시간대에 대한 우리 재단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시부터 몇시까지인가요?

○ 간사 ○○○

운영팀 본부장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 DDP운영본부장 ○○○

DDP 운영본부장 ○○○입니다.

지금 철야시간대는 23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 이사장 ○○○

여기 보면 10시부터 21시가 대관의 기준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가 21시부터 23시, 08시부터 10시까지 약 2시간 정도씩 여유가 있군요.

이 시간대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 DDP운영본부장 ○○○

사실 시간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현재까지는 23시 내지 24시까지는 추가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냥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그다음 날 까지 넘어가게 될 경우에 하루치를 부과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간대로 이 비용을 150% 할증률을 붙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야간근무는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대관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사장 ○○○

이 시간은 일종에 여유 서비스 시간이군요?

○ DDP운영본부장 ○○○

예.

○ 이사 ○○○

다른 전시시설보다 마감시간을 굉장히 늦춰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DDP 특성 때문에?

다른 데는 다 7시, 8시 그런 정도인데, DDP만 9시로 해 놨네요.

○ DDP운영본부장 ○○○

이 부분은 저희가 초기에 11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오전 10시부터 21시까지로 일단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시작하는 날은 크게 상관없으나 끝나는 날 대략 한 6시 정도, 7시 정도에 행사가 마무리되면 그날 당일날 철수를 할 수 있을 경우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사 ○○○

실제 전시 마감은 한 7시 전에 다 끝나는데.

○ 대표이사 ○○○

혹시 당일이라도 철수를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죠.

○ 이사 ○○○

합리적으로 수정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23시 전에 하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1시간만 넘겨도 하루치를 내야 되고 그래서 부당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시간 단위로 하니까 미리 나간 사람도 조금 내고, 한두 시간 넘어간 사람도 조금만 내고, 합리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 대표이사 ○○○

가급적이면 11시 내까지는 봐주니까 빨리 철수를 하든지, 더 넘을 경우는 카운트해서 돈을 낸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니까요.

○ 이사 ○○○

그런데 실제로 직원들은 이 시간 때문에 계속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 대표이사 ○○○

그래서 '할증'이라는 것을 넣는 것이죠.

○ 이사장 ○○○

다른 유사기관들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철야를 하지 않도록,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관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

다른 기관보다는 150% 할증을 적용하기로 한 것인데, 우리 DDP 사용자 특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시고 150% 적용하신 것이죠?

다른 데 보니까 코엑스는 시간당 120, 장충체육관도 130, 예술의전당이 한 150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기관들 참고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요.

○ DDP운영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 이사 ○○○

우리 DDP를 이용하는 분들의 수준이나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된 것이겠죠? 야간 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있거나 부담이 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 DDP운영본부장 ○○○

그리고 실제로 (p)45의 임대료 상황을 보시면 저희는 150%를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비용 이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 기관의 경우 부가세 별도, 전기, 관리비 별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다 감안했을 때는 타당한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사 ○○○

잘 이해했습니다.

○ 이사 ○○○

대외적으로 다른 기관처럼 1시간을 만약 20시로 하고 할증을 130% 한다, 어느 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상징적으로 보면 괜히 다른 데보다 할증을 더 받는다는 이미지를 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 차이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이사장 ○○○

이렇게 쪼개서 사실 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아서, 가능하면 대관 운영시간 안에 그 역할을 하도록, 기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 이사 ○○○

2시간의 프리 시간을 주니까요.

○ 이사장 ○○○

서비스 시간인 거죠.

○ 대표이사 ○○○

그리고 경비 이런 비용들이 관리비용이 다른 시설보다, 외부 기관보다 훨씬 더 많이 받
는다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100% 주장을 했는데 시와 전체 조율을 해 보고, 그래도 150%
하는 것이 정책에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 이사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DDP 대관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 제174호, 제175호, 제176호, 제177호, 그리고 제178호가 원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Ⅲ. 보고안건 보고

○ 이사장 ○○○

계속해서 간사는 보고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보고안건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입이사 임명 및 노동이사 선거 진행 건입니다.

2018년 공개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자 2배수 추천을 통해서 2019년 1월 11일자로 임원 세 분이 임명되었으며, 임기는 2022년 1월 10일까지입니다.

지난 56차 이사회 의결 및 서울시장 승인으로 면직처리된 노동이사 결원에 따라 노동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14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자 모집공고 후 3월 11일 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는 바, 후보자 중 팀장급 지원자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피선거권 자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노사전문가 검토 및 노사협의회를 거쳐 선거일정을 재조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인사규정 시행내규, 계약직 운영내규, 비상용직 관리내규, 직원 근무평정 내규, 공무국외출장심사 내규가 개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2018년 감사 종합보고 건입니다.

2018년 내부감사는 재단 감사실 및 감사원에서 진행하였으며, 건수는 총 9건으로 정기감사 8건, 특별감사 1건이었고, 외부감사는 서울시 조사담당관에서 3건, 감사담당관에서 2건으로 총 5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합감사보고서 별도 서면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사장 ○○○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

근로자, 사용자 범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나보죠?

○ 간사 ○○○

그렇습니다.

○ 이사 ○○○

노동이사 입후보나 노동이사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한 후에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간사 ○○○

그렇습니다.

○ 이사 ○○○

1년 내내 감사 받느라고 고생들 하셨겠네요.

○ 이사장 ○○○

노동이사와 관련해서는 노조위원장 참석하셨으니까 혹시 의견 있으면 이사님들 계신 데서 의견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조위원장 ○○○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입후보한 3명 중 한 분은 전임 노조위원장이셨고, 한 분은 전임 노동이사셨고, 또 한 분은 3급 팀장인데, 노조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워서 발언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 이사장 ○○○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해에 걸쳐서 반복되는 우리 재단의 여러 가지 제보로 장기간 외부감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특히 2017년에는 감사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단에서 그런 외부감사 이전에 자정적으로 사전에 예방 차원의 감사라든가 또 설사 감사요건이 만들어진 것들도 사후에 조치하는 그런 좋은 계획이나 장치를 마련하고 계신지 여쭙보고 싶어요.

이것이 끊임없이 제보에 의해서 외부감사가 계속된다면 우리 재단으로도, 또 서울시의

입장이나 시민에게 보여지는 재단의 위상에 결코 좋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감사로 인한 그러한 조치들이 2017년 같은 경우에도 근 1년 가까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결과가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 또는 자정적인 그런 역할로 선제적으로 내부조치를 취하시나 이런 것들이 구성원들 가운데 공감도 있어야 하고 그런 자정능력도 또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실장께서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자체적인 예방이나 사후에 대한 의견 혹시 있으시면 이사님들 계신 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감사실장 ○ ○

감사실장 ○ ○입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파견 나왔고, 작년 8월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감사실 직원이 2명 있었고, 현재는 저까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오기 전에 2017년, '16년도 제보가 계속 조사가 이루어졌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에도 계속 제보가 들어오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파견 나와서 그 뒤로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다른 재단에 비해서 제보가 많다는 감사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실장으로 와서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자체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에 중점을 두자 해서 일상감사를 확대했고, 그래서 금년도는 자체감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단 올해 3분기 중에 서울시 종합감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감사실은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일상감사도 작년보다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취약분야를 상반기에 자체감사를 추진해서 근본적인 구조를 근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기존에 예산과 계약분야에 한정돼서 운영됐었는데, 금년 1월부터는 채용분야까지 확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외에 주요 현황사항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시에 근무한 30년 경험을 가지고 직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직원들이 감사실에 안 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주 오시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사전예방보다 사후에 일을 잘못해서 어떻게 해야 하

는지 그런 상담을 와서 감사부서가 할 정도로, 제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사전 예방과 사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요 감사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 중에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계약 분야에 10억 이상의 중요계약을 사전 스크린하고 거기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보고 문제가 있으면 처분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지금까지 계속 해 왔지만 업무추진비라든가 복무실태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잘 갈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 ○○○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께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너무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폐회 : 17시 04분)

IV. 폐 회

○ 이사장 ○○○

이상으로 이사회 마치겠습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의결서, 의사록에 서명날인을 부탁드립니다.

○ 이사 ○○○

한 가지 건의사항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첫 이사회인데, 제 기억에는 작년에 저희가 이사회를 할 때 신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고 그때 말씀드린 예산서 위주로, 숫자 위주로 돼 있어서 대표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대표님의 철학이 담긴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자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 대표이사 ○○○

그럼 다음 번 이사회 때 하겠습니다.

○ 이사 ○○○

다음번에 하면 벌써 한 해가 많이 가서 조금 아쉽네요.

○ 대표이사 ○○○

다음번 이사회를 빨리 할까요?

○ 이사장 ○○○

원래는 2018년도 마지막 이사회에서 예산계획과 사업계획을,

○ 이사 ○○○

그때 그렇게 봤는데 그것이 너무 숫자 위주로, 예산서 위주로 돼 있어서, 대표님의 새로운 철학도 담긴 새로운 사업계획을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요.

○ 대표이사 ○○○

예, 하겠습니다. 저희가 깜빡 했습니다.

○ 이사장 ○○○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대표이사 ○○○

예.

그러면 과장님, 아마 다른 안건 때문에 임시이사회 해야 되죠?

4월 말, 5월 초에 아마 안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사 ○○○

이사회 일자를 미리 주시면 가능한 참석하겠습니다.

○ 대표이사 ○○○

요일을 미리 정할까요?

- 차기 이사회 일정 조정 -

그러면 4월 24일 10시로 하겠습니다.

○ 이사장 ○○○

그러면 이상으로 이사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